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88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민병덕·위성곤·김한규

김남희 • 이수진 • 박희승

김성환 · 김남근 · 김종민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 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8조의2제1항 중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제176조, 제178조, 제1 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4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u>제1</u>	<u>제1</u>		
<u>76</u> 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76조, 제178조, 제180조 또는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		
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u> </u>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거나 수사 · 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			
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			
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